

##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일정을 견디어 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II. 총 평

###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올해 민법 시험은 이미 기출되었던 판례와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 그리고 마무리 강의 때까지 제공한 2019년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고, Box형 문제(1문제)와 사례형 문제(2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였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은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또한 2회에 걸친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출제할 바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② 개괄적으로 보아 작년에는 좀 지엽적인 주제와 판례를 출제함으로써 난도를 높였다면, 올해에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함과 더불어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는 판례, 또는 실제 다른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2차 시험에서 나온 판례이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로 그 법리를 좀 더 정치하게 익혀야 하는 판례를 대거 출제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해서 말하면 올해는 그야말로 과거 순수했던 1차와 2차의 확실한 경계선을 무너뜨린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과거의 유형에 맞춰서 어설프게 대비했다면 점수도 그와 같이 어설프게 나올 것이고, 좀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대비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③ 다만 합격선 근처에 있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40문제 중 7문제 정도 내로 틀렸다면 합격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 2. 개별적 평가

####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올해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② 특징적인 것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Box형 문제와 점유취득시효와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례형 문제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처음 접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수 있었지만, 강의 중에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였고,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나 모의고사 문제로도 출제할 바가 있어

서 이에 대응할 정도의 연습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③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문제가 상당수 되었습니다. 즉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는 보통 하나의 주제나 법리에 대한 설명으로 한정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과 같이 어떤 주제나 법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출제되는데, 살펴보건대 크게 총 9문제(민총에서 2문제와 채권법에서 4문제, 물권법에서 3문제의 비율로 출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정도에 이릅니다.
- ④ 결론적으로 말해 민법에 있어 종합적·전체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형식의 변화를 감지하여 2020년 시험을 지혜롭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2) 영역별 평가

영역별로 보면,

-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민법 종합
11문제	15문제	10문제	3문제	1문제

-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민법 종합
10문제	14문제	9문제	5문제	2문제

작년과 달리 눈에 띄는 것은 올해에는 가족법의 비중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깨졌다고 보기는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 ① 작년에도 조문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었는데, 올해에는 보다 더 낮아졌고 역시나 지문의 중심은 판례였습니다. 조문의 해석·비교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조문 자체만으로 구성된 문제는 대략 1문제 정도였고, 그것도 가족법 문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이며, 총 200개 지문 중 조문에 관한 지문은 대략 13개 정도였습니다. 가족법 문제가 작년과 같이 3문제 정도였다면 이보다 더 적은 수가 출제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상당히 길었으나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되었어야 했었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실력이 부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쉽고 씁쓸한 말이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①번, ②번, ③번 지문에서 정답으로 골라지도록 출제된 문제가 40문제 중 22개 문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위 지문을 볼 때 정확히 정답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면 그 만큼 시간은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식 지문은 어차피 판결요지를 지문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를 공부할 때 키워드나 핵심 문장 등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했고, 일정한 패턴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정리했었다면 시간부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② 혹여나 올해 시험에 함정이 많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떤 판례를 정리할 때에 결론만을 기억하는 식으로 정리했다면 함정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판례를 공부할 때 키워드나 핵심 문장 등을 익숙하게 만들고 일정한 패턴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와 기본원리를 정리했다면 함정이라고까지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스스로 함정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미처 핵심이나 원리가 되는 부분임을 알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하겠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p>민 총 (10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li> <li>▶ 실종선고</li> <li>▶ 비법인사단</li> <li>▶ 중중</li> <li>▶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li> <li>▶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li> <l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li> <li>▶ 무권대리</li> <li>▶ 무효</li> <li>▶ 부관</li> </ul>
<p>채권총론 (8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채무 불이행</li> <li>▶ 손해배상</li> <li>▶ 채권자대위권</li> <li>▶ 채권자취소권</li> <li>▶ 채권양도</li> <li>▶ 변제</li> <li>▶ 상계</li> <li>▶ 보증채무</li> </ul>
<p>채권각론 (6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를 위한 계약</li> <li>▶ 매도인의 담보책임</li> <li>▶ 주택임대차</li> <li>▶ 도급</li> <li>▶ 부당이득</li> <li>▶ 불법행위</li> </ul>
<p>물권법 (9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권적 청구권 - Box형 문제</li> <li>▶ 등기</li> <li>▶ 점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시효 - 사례형 문제</li> <li>▶ 명의신탁</li> <li>▶ 전세권</li> <li>▶ 유치권</li> <li>▶ 저당권(근저당) - 2문제</li> </ul>
가족법 (5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의 효과 - 양육·면접교섭권</li> <li>▶ 입양</li> <li>▶ 후견</li> <li>▶ 상속회복청구권</li> <li>▶ 유류분</li> </ul>
종합 (2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예약·준소비대차·위임·조합·화해계약을 지문으로 1문제</li> <li>▶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종합 사례형 문제</li> </ul>

이렇게 본다면, 비교적 중요한 주제나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컷트라 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경우이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뒤통수만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